

의안번호	제 호	의결사항
의결 연월일	20 . . . (제 회)	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
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제출자	국무위원 ○○○ (국방부장관)
제출연월일	20 . . .

법제처 심사 전

1. 의결주문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출산 초기 남성이 육아에 동참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를 확대하고, 미숙아 출산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출산휴가를 확대하는 등 출산·양육 친화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군인의 휴가제도를 개선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가.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(안 제12조제1항제5호)

현행 1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15일)의 배우자 출산휴가를 20일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는 25일)로 확대함.

나.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 확대(안 제12조제2항)

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 현행 90일의 출산휴가를 100일로 확대함.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인사혁신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 예고(2024.12.3.~2025.1.13.)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제12조제1항제5호 중 “10일”을 “20일”로 하고, “15일”을 “25일”로 하고,
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“한”을 “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, 한”으로 하고,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각 호 외의
부분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,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배우자 출산에 따른 경조사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배우자 출산휴가를 사용하였으나 사용기한이 남아있는 군인 또는 사용 중인 군인에게도 적용한다.

제3조(미숙아 출산에 따른 출산휴가에 관한 적용례)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미숙아를 출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출산 전 어느 때라도 최장 44일
(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임
신한 경우에는 59일)의 범위에
서 출산휴가를 나누어 사용할
수 있다. <후단 신설>

- 1. ~ 3. (생략)
- ③ ~ ⑬ (생략)

---. 이 경우 미숙아의 범위, 출산휴가 사용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.

- 1. ~ 3. (현행과 같음)
- ③ ~ ⑬ (현행과 같음)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국방부 양성평등정책팀	
연 락 처	(02) 748 - 6149